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1)도로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지	기	초
3000	경제개발비	327,512,106	292,979,226	34,532,880	[국 14,627,100 [기 0	도 13,135,780 분 0	지 0 교 6,770,000	균 0	0]
3300	국토자원보존개발비	327,512,106	292,979,226	34,532,880	[국 14,627,100 [기 0	도 13,135,780 분 0	지 0 교 6,770,000	균 0	0]
3320	건설치수	327,512,106	292,979,226	34,532,880	[국 14,627,100 [기 0	도 13,135,780 분 0	지 0 교 6,770,000	균 0	0]
3321	도로관리	182,284,965	170,869,537	11,415,428	[국 △478,283 [기 0	도 8,893,711 분 0	지 0 교 3,000,000	균 0	0]
200	사업예산	182,233,245	170,817,817	11,415,428	[국 △478,283 [기 0	도 8,893,711 분 0	지 0 교 3,000,000	균 0	0]
210	보조사업	91,712,417	92,190,700	△478,283	[국 △478,283 [기 0	도 0 분 0	지 0 교 0	균 0	0]
	308 자치단체등 이전	0	34,700	△34,700					
		0	34,700	△34,70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접도구역관리			=	△34,700 (국) △34,7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64,562,000	64,562,000	0				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1)도로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62,533,166	62,271,166	262,000	01 시설비 ○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(균) 262,000 · 공사비 40,057,000,000원 - 39,795,000,000원 = 262,000 (균) 262,000
		1,943,000	2,100,000	△ 157,000	02 감리비 ○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,943,000,000원 - 2,100,000,000원 = △ 157,000 (균) △ 157,000
		85,834	190,834	△ 105,000	03 시설부대비 ○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37,500,000원 - 142,500,000원 = △ 105,000 (균) △ 105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27,150,417	27,594,000	△ 443,583	
		27,150,417	27,594,000	△ 443,583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9월 호우피해복구(성립전예산) (국) 2,087,417 (국) 2,087,417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1)도로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· 시군도 = 830,340 (국) 830,340
					· 농어촌도로 = 1,257,077 (국) 1,257,077
					○국도대체우회도로 17,736,000,000원 - 20,267,000,000원 = △2,531,000 (국) △2,531,000
220					[국 0 도 8,893,711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3,000,000]
자체사업		90,520,828	78,627,117	11,893,711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59,606,000	58,016,000	1,590,000	
		57,821,500	56,216,460	1,605,040	01 시설비 ○지방도 확포장 56,307,800,000원 - 53,307,800,000원 = 3,000,000 (교) 3,000,000 ○도계안내표지판 정비 = △1,394,960
		184,500	199,540	△15,040	03 시설부대비 ○도계안내표지판정비 = △15,040
	403 자치단체등	21,905,000	14,605,000	7,300,000	

과	목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자본이전				
		21,905,000	14,605,000	7,30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
					○천안여상인근 인도 설치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				○불교문화센터 진입도로 2,500,000,000원 x 50% = 1,250,000
					○계룡산 도예촌 진입도로 1,500,000,000원 x 50% = 750,000
					○외연도 해변도로 개설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				○주산 웅포간 시도 확포장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				○주포 오천간 도로 확포장 100,000,000원 x 50% = 50,000
					○해미 공군부대 진입도로 = 1,200,000
					○양천선 도로확포장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				○부석 강마선 도로개설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				○노성 화곡~ 계룡 월곡간 도로 확포장 400,000,000원 x 50% = 200,000
					○마전 소방도로 개설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				○동면 음암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				○전의 읍내리 농협뒤 도로개설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				○비암사 진입도로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				○백제역사 재현단지 진입도로 2,000,000,000원 x 50% = 1,000,000
					○나령도로 확포장 1,000,000,000원 x 50% = 500,000
					○신성리 위험도로 개선 400,000,000원 x 50% = 20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1)도로관리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규암 금암~신성간 도로개설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 ○장암 함곡 남면 도로 확포장 500,000,000원 x 50% = 250,000 ○나석교 가설공사 400,000,000원 x 50% = 200,000 ○판교~문산도로확포장 1,000,000,000원 x 50% = 500,000 ○비봉 신원리 공동주차장 시설 100,000,000원 x 50% = 50,000 ○소원 모항리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 100,000,000원 x 50% = 50,000 ○대호지 조금~출포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
	701 기타회계전 출금	8,400,000	5,400,000	3,000,000	○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8,400,000,000원 - 5,400,000,000원 = 3,000,000
	705 예수금원리 금상환	59,828	56,117	3,711	
		59,828	56,117	3,711	02 예수금이자상환 ○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= 3,711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2)치수방재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3322	치수방재관리	100,799,749	88,504,470	12,295,279	[국 12,045,068 도 △3,519,789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3,770,000]
200	사업예산	100,701,109	88,405,830	12,295,279	[국 12,045,068 도 △3,519,789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3,770,000]
210	보조사업	86,637,359	74,592,291	12,045,068	[국 12,045,068 도 △3,770,000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3,770,000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33,408,000	33,408,000	0	
		33,331,162	33,331,162	0	01 시설비 ○수해상습지 개선사업 = 0 (도) △3,770,000 (교) 3,770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53,229,359	41,184,291	12,045,068	
		53,229,359	41,184,291	12,045,068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9월 호우피해복구(성립전예산) 12,045,068 (국) 12,045,068 · 도시방재시설 = 3,300,000 (국) 3,300,00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2)치수방재관리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· 소하천 = 4,119,882 (국) 4,119,882
					· 지방하천 = 4,611,627 (국) 4,611,627
					· 상수도 = 13,559 (국) 13,559
220	자체사업	14,063,750	13,813,539	250,211	
	207 연구개발비	0	4,000	△4,000	
		0	4,000	△4,000	02 전산개발비 ○방재전용 웹서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= △4,00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9,345,000	9,095,000	250,000	
		9,345,000	9,095,000	25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직산 마정 1리 신마천 정비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 ○남일 신정2리 제방석축 200,000,000원 x 50% = 100,000 ○청양 송방2리 하천정비 100,000,000원 x 50% = 50,000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)건설치수

세항:(3322)치수방재관리

세세항:(220)자체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705 예수금원리 금상환	67,882	63,671	4,211	
		67,882	63,671	4,211	02 예수금이자상환 ○수해상습지 개선사업 = 4,211
3323 종합건설사업		5,304,440	3,279,966	2,024,474	[국 2,011,074 도 13,400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100 경상예산		2,970,426	3,007,026	△36,600	
120 경상적경비		388,468	425,068	△36,600	
	203 업무추진비	21,870	58,470	△36,600	
		13,200	49,800	△36,600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○집행잔액 13,200,000원 - 49,800,000원 = △36,600
200 사업예산		2,334,014	272,940	2,061,074	[국 2,011,074 도 50,000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210 보조사업		2,011,074	0	2,011,074	[국 2,011,074 도 0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	401 시설비및부	2,011,074	0	2,011,074	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3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3)종합건설사업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대비				
		2,011,074	0	2,011,074	01 시설비 ○9월 호우피해복구(성립전예산) (국) 2,011,074 · 지방도 수해복구 = 2,011,074 (국) 2,011,074
220	자체사업	322,940	272,940	50,00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28,541	178,541	50,000	
		228,541	178,541	50,000	01 시설비 ○청사 보수보강공사 = 50,000
3324	종합건설지소운영	11,737,630	10,808,389	929,241	[국 1,049,241 도 △120,000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100	경상예산	4,957,940	5,077,940	△120,000	
110	인건비	4,261,925	4,355,925	△94,000	
	101 인건비	4,261,925	4,355,925	△94,000	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1,268,169	1,318,169	△50,000	01 기본급 ○공주지소 · 기본급 726,514,000원 - 776,514,000원 = △50,000
		302,452	297,452	5,000	02 수당 ○홍성지소 · 수당 부족분 127,406,000원 - 122,406,000원 = 5,000
		199,564	210,564	△11,000	06 가계지원비 ○공주지소 · 가계지원비 113,040,000원 - 124,040,000원 = △11,000
		226,506	289,506	△63,000	08 기타직보수 ○공주지소 · 기타직보수 부족분 156,973,000원 - 154,973,000원 = 2,000 ○홍성지소 · 집행잔액 69,533,000원 - 134,533,000원 = △65,000
		1,889,666	1,864,666	25,000	09 일용인부임 ○공주지소 · 퇴직금 부족분 25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4)종합건설지소운영 세세항:(110)인건비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1,020,901,000원 - 995,901,000원 = 25,000
	120 경상적경비	696,015	722,015	△26,000	
	301 일반보상금	97,564	123,564	△26,000	
		97,564	123,564	△26,000	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○ 흥성지소 △26,000 · 집행잔액 38,381,000원 - 64,381,000원 = △26,000
	200 사업예산	6,779,690	5,730,449	1,049,241	[국 1,049,241 도 0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	210 보조사업	1,049,241	0	1,049,241	[국 1,049,241 도 0 지 0 균 0] [기 0 분 0 교 0]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,049,241	0	1,049,241	
		1,042,046	0	1,042,046	01 시설비 ○ 공주지소 465,514 (국) 465,514 · 9월 호우피해복구(성립전예산) 465,514 - 지방도 수해복구 = 465,514 (국) 465,514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홍성지소 576,532 (국) 576,532 · 9월 호우피해복구(성립전예산) 576,532 - 지방도 수해복구 = 576,532 (국) 576,532
		7,195	0	7,195	03 시설부대비 ○공주지소 3,376 (국) 3,376 · 9월 호우피해복구(성립전예산) 3,376 - 지방도 수해복구 = 3,376 (국) 3,376 ○홍성지소 3,819 (국) 3,819 · 9월 호우피해복구(성립전예산) 3,819 - 지방도 수해복구 = 3,819 (국) 3,819
3325	백제권개발	27,385,322	19,516,864	7,868,458	
100	경상예산	1,448,170	1,636,850	△188,680	
110	인건비	1,129,530	1,268,210	△138,68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5)백제권개발

세세항:(110)인건비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101 인건비	1,129,530	1,268,210	△138,680	
		568,249	668,249	△100,000	01 기본급 ○기본급 568,249,000원 - 668,249,000원 = △100,000
		45,000	43,680	1,320	03 정액급식비 ○부족분 45,000,000원 - 43,680,000원 = 1,320
		53,658	63,658	△10,000	05 명절휴가비 ○명절휴가비 53,658,000원 - 63,658,000원 = △10,000
		86,740	116,740	△30,000	06 가계지원비 ○가계지원비 86,740,000원 - 116,740,000원 = △30,000
	120 경상적경비	318,640	368,640	△50,000	
	201 일반운영비	196,020	246,020	△50,000	
		0	50,000	△50,000	02 행사지원비 ○백제역사문화관 개관식 행사(과목경정) = △50,000
	200 사업예산	25,937,152	17,880,014	8,057,138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건설치수

세항:(3325)백제권개발

세세항:(210)보조사업

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10 보조사업	24,660,000	16,660,000	8,000,00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24,660,000	16,660,000	8,000,000	
		23,901,240	15,901,240	8,000,000	01 시설비 ○백제역사재현단지 부지매입비 = 8,000,000
	220 자체사업	1,277,152	1,220,014	57,138	
	201 일반운영비	550,000	500,000	50,000	
		100,000	50,000	50,000	02 행사지원비 ○백제역사문화관 개관식 행사(과목경정) = 50,000
	705 예수금원리 금상환	159,455	152,317	7,138	
		159,455	152,317	7,138	02 예수금이자상환 ○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= 7,138
세 출 합 계		327,512,106	292,979,226	34,532,880	